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5
----------	------

제출연월일 : 2026. 2. .  
제출자 : 하남시장

## 1. 개정이유

-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수별 사용량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조문 일부개정(안 제42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5. 12. 23.~2026. 1. 12.(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15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수도요금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서명		상수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상수도과장 전 일
	팀장 직위·성명	요금팀장 김 영 광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영 광 (031-790-534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7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p> <p>7.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2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15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p> <p>7.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서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수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3

####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11. 30.] (일부개정) 2020. 11. 30 조례 제1853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4

####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4. 12. 24.] (일부개정) 2024. 12. 24 조례 제2382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